

Contents

I. 일반사항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계약제교원의 채용 조건	1
3. 제도 운영 목적	1
4. 관련 근거	2
II.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
1. 공통 사항	2
2.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4
III. 계약제교원의 복무	15
IV. 질의·응답	21
V. 참고 자료	25
1. 계약제교원 운용 근거	25
2.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 근거	36
3. NEIS 기간제교원 인사기록 관리	38
4.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	42

VI. 참고 서식	45
1. 채용계획 기안문	45
2. 채용 공고문	46
3. 기간제교원 지원서	49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0
5.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 (신규임용대기자용)	51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52
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53
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55
9. (결격사유 조회 지연 시) 서약서	57
10. 계약제 교원 경력이 있는 교사의 임용서류 송부 요청 기안문	58
11. 임용심사위원 서약서	59
12. 서류전형 평가표	60
13. 면접 평가표	61
14. 수업시연 평가표	62
15. 평가 집계표	63
16.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명예교사) 계약서	64
17. 계약제교원(강사) 계약서	68
18. 기간제교원 임용 기안문	71
19. 임용장	73
20. 기간제교원 해임 기안문	73
21.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74
22.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75
23.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집계표	76
24.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77
25.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8
26. 학급감축 조기복직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확인서	79
27.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80
28. 중도계약해지예고 통지서	81
29. 시간강사 임금명세서	82

VII. 기간제교사 육아휴직 시행 안내	84
-----------------------------	----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2. 1.

I

⇒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 다.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계약제교원의 채용 조건

- 가. 정규교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교사로 채용하는 경우
- 나. 특정 사업부서의 계획으로 채용 근거가 있는 경우

3 제도 운영 목적

-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 정규교사의 결원,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에 따른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 학생중심, 과정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반드시 근거 사업이 있어야 하며,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 2) 소규모 학교의 전공불일치과목 해소 기여
 - 3)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관련 근거

-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관련 규정 별첨)
- 나.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06.03.)호.]
- 다.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시행계획[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7729(2014.06.02.)호.]
- 라. NEIS 연계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계획[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0522(2015.07.24.)호.]

II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 공통사항

- 가. 대상 : 국·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사립은 별도)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나. 임용계약 : 표준계약서(서식 16, 17)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 임용 상한연령 : 만62세 이내. (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시간강사 포함)
- 라. 임용권자 : 학교장(단, 교육지원청 소속(전문상담순회, 특수순회, 교과순회전담교사)은 교육장)
- 마. 임용 시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공고시 1차 전형에서는 기초심사자료(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외 서류 요구 지양
- ※ 기초심사자료를 거짓 작성하였다면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계약자 본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근무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함)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임용 기관	• 호봉확정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결격·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호봉확정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결격·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	---

2) 서류 징구

- 결격사유 조회 업무는 <e-하나로 민원시스템 범죄경력 조회 권한 신청 및 활용 안내_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1152(2020.07.10.)>에 따라 처리하나 본 시행 공문 이후 결격사유 조회 관련 안내 공문이 추가 시행되는 경우 최종 안내 공문에 따라 처리
-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할 때에는 기재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
-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할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합격여부는 학교장이 판단)로 대체 가능
- 신규임용대기자 : 임용후보자 임용구비서류 확인원(경기도교육청 민원실 발부, 팩스민원신청)으로 대체
-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다른 학교의 임용 서류를 공문으로 받아 활용 가능(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1464, 2007.3.27.)하나, A학교와 B학교 간 임용기간의 단절로 새로이 서류를 징구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되, **이전 근무학교에 서류 송부 요청 시, 요구를 받은 전 임용권자는 요청서류를 송부해 주어야 함.**

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는 1년 이내의 것만 유효(아동복지법 제 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바. 채용서류의 반환

-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19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기록관리기준표」, 공공기록물(개인정보 포함 기록물) 관리 방안 알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지원부-8424 (2017.11.06.)호)
- 교직원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할 수 없음
-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청구서(서식 6)를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반환의무 없음

사. 퇴직금 : 관계 법령에 의함 (※ 근로기준법)

- 계약제교원 면직일

· 계약만료 퇴직: 마지막 근무일이 면직일

· 중도 퇴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면직일

(근거: 교육공무원 호봉확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계약제교원 경력증명서 발급 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발급할 것(중도퇴직자 면직일 미포함)



※ 참고 사항

-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3년내 당사자가 미청구시 권리 소멸).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1일(또는 9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 3) 퇴직금적립의 관리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 4) 학교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로기간을 누적관리하여 퇴직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 ※ 퇴직금 지급시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기준 : 전년도 동일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년도 동일교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함

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계 법령에 의함

※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함

자. 유의사항

-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계약제교원 채용에 있어 비위사항 발생 시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채용비리 발생교는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가. 기간제 교원

- 1)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가) 1개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1호, 제2호)
 -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교원 임용(제1항 제3호)
 - 정원의기간제교원(미배치기간제 포함)이 해당하며, 교육청의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다)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4호)
 - 라)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동법 제1항 3호~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 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2) 임용 자격 및 임용 제한 사항
 - 가) 임용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 나) 임용 제한 사항
 - ① 명예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 채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2015.3.1.자 시행])



- 초등: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 2018.5.1.자 시행)
- 중등: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 (2022.3.1.부터 2024.2.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이후 지침은 추후 안내)
- 명예퇴직 초·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
- ②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10조의3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중략>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략> 교원으로 신규 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10조의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 ④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 교원은 임용 불가함

3) 채용 절차

1월(曆算 기준) 이상 결원 발생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 적정 전형일(채용 공고기간 등),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 채용방법, 계약기간(채용 예정인원이 다수인 경우 채용분야별 계약기간 명시),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함 ◦ 채용계획 도교육청 홈페이지(채용공고시 채용계획 첨부)
----------------------------------	---



채용 공고	◦ 방법 및 기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생년월일로 대체) - 도교육청홈페이지에 의무공고하며, 교육지원청홈페이지 및 각종 취업포탈을 활용함 - 기간제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음 - 일정기간 의무 공고(등록일 제외 3일 이상 권장, 부득이 공고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 - 단, 기타 다른 법령에 공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채용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고기간을 적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문구 삽입 금지 ◦ 내용: 과목, 자격기준, 계약 조건, 채용기간,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 구비 서류, 채용 일정 등 ('담임' 및 '비담임' 구분 금지)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 (공고만 생략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해야 함, 공고 생략 시 인력풀 등록하면 출력 후 보관) - 신규 채용 시 •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 시 •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 시 ※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 신청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외하고 모두 검토한 뒤, 결격여부 조회 후 모두 이상이 없을 시 등록 -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현재 재직 중인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기간 단절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 채용서류 접수 방법 : 우편·방문·이메일·팩스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 병행 권장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회제도개선과-533(2020.4.9.)호)
----------	--



선 발 전 형	일반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 과목, 자격기준, 신체상황, 결격사유 조회 등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통근거리, 성별, 나이 등 불합리한 평가사항 포함 지양) ◦ 면접 등 심사 - 면접 및 기타 시험, 수업시연(학교여건에 따라)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인성 등 심사 - 면접 절차는 필수 사항임(면접 시 차별적 내용의 질문 지양)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전형 등 채용업무를 대신 진행하여 선발된 교원을 추천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기간제 교원 인력풀 활용	◦ 인력풀에서 후보 선정(복수 후보자 선정 권장)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 면접 등 심사 - 면접 절차는 필수 사항임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계약 및 임용	◦ 1년 단위 계약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의무연수, 평가 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_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 임용
------------	--

※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선발하되,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4) 임용업무처리 기타 세부사항

가) 선발 전형(공개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1차 서류전형(서면심사 포함) → **2차 면접(필수)** → 3차 수업시연(학교 여건 고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등 → 전형결과 보고(내부결재) → 채용 결정

- ① 선발전형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필수절차를 제외한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또는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②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채용계획, 채용공고, 계약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함(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를 명확히 함). 서류전형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함.
 - ③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 시, 또는 현재 재직 중인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교사를 기간 단절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에는 공고 생략 가능함
(공고만 생략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해야 함)
 - ④ 홈페이지 채용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 공고하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하지 않음.
 다양한 구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 공개채용 실시
 ※ 기간제교원 구인 채널 : 기간제교원 NEIS 인력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채용정보-구인-기간제교원), 각종 취업포털
 - ⑤ 면접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지원자 간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은 지양함
- 나) 가산점 부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가 채용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①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경기도교육청 총무과-790(2016.01.11.)호,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177(2016.01.0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및 보훈지청 명칭 변경 안내
 - ② 대상 : 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③ 가산점 부여 방법 :
 모든 영역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10%씩 가산,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5%씩 가산(단,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다)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결격사유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시간이 지연될 경우 ‘조건부 계약’ 또는 ‘서약서(서식 9)’를 활용함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9081(2010.08.28.)〕

- 조건부 계약 내용(예시) : 제00조 사용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실시하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채용 결정 및 계약 임용

- ①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 ② 1년 이내 단위로 계약
- ③ 계약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연수 의무, 평가 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서식 16, 17) → 임용

5) 임용기간

가)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임용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질의응답7번 참고)

나) 정규교원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6) 경력인정: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8시간 미만은 절사)로 경력 평정

7)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 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 ②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14호봉(근무년수 5년)을 넘지 못함
(근거: 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623(2015.05.06.)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6180(2015.06.03.)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5845(2015.06.01.)호.,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2.24.))
- ③ 호봉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근거) 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 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자격변동에 따른 호봉(1호봉)만 재산정하여 봉급으로 지급하며, 잔여 개월수를 합산하여 호봉 재획정은 불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2020.6.23. 타법개정)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나)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06)

다) 보수지급 방법 :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8) 인사 관리

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지원한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장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다) 기간제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나이스 (NEIS)에 등록하여 관리함

라) 직전 계약제교원 근무지가 동일교인 경우에 자료전송기능을 적극 활용함 : [참고자료 3. NEIS 기간제교원 인사기록 관리] 참고

마) 학교장은 기간제교원 채용 시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바) 기간제교원 업무 배정 원칙

- 기간제교원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유의

9)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가) 계약 내용으로 명시 :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예시

제○조(연수) “○○○”는(은)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 : 1개월 이상 채용자

다) 의무 연수 시간 : 계약 기간 1개월 당 3시간 이상씩, 10개월~12개월은 30시간 이상

- 계약 기간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10069(2015.09.08.)호, 학교정책과-9529(2015.11.03.)호)

예1) 계약기간이 1개월 14일(즉 1개월 계상) : 연수 의무 시간은 3시간 이상



예2) 계약기간이 1개월 15일(즉 2개월 제상) : 연수 의무 시간은 6시간 이상

예3) 계약기간이 1년 : 연수 의무 시간은 30시간 이상

라) 연수 이수 기간 : 반드시 계약기간 중 이수

마) 연수 내용

-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 연수(학생생활교육, 상담능력 등)(1급 자격연수 포함)
- 직무연수(계약기간 내 자율 편성된 학교 단위별 교육 및 멘토링,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연수 등)
- 연수 이수완료 후 이수증(이수 확인 공문 사본 등)은 개인 보관

바) 연수 방법

-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부인가 원격 연수원 등의 사이버 연수 등
- 계획에 의한 수석교사 멘토링, 단위학교의 자율연수 또는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육지원청의 집합 연수 등

사) 연수실적 관리

- 학교 인사담당자(교감)는 계약 종료 전에 연수 이수사항을 확인 후 기록
- NEIS 계약직인사기록카드-연수 및 '기간제교원 연수실적카드' 관리

연수이수번호	연수과정명	연수기관	연수기간	연수시간
(예시) 미부여	학교자율연수	**중학교	20**. **. **	1시간
(예시) 미부여	기간제교원연수	**교육지원청	20**. **. **	2시간
(예시) 경기-*****20**	행복한 상담	경기도교육연수원	20**. **. ***~20**. **. **	10시간

10) 기간제교원 평가 및 NEIS 인력풀 등록

가) 평가 주체 : 단위학교 학교장(소속 기관장)

나) 평가 대상 :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은 의무

- 단,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중 인력풀 등록 희망 교사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및 인력풀 등록도 가능

다) 평가 내용 : 의무연수 이수 여부, 복무자세, 인성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자질, 수업실적, 학급 운영 및 학생생활교육 등 종합적으로 평가

라) 평가 방법 : 계약 체결 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서식 21]를 받고 기간제교원평가서를 작성·보관

- 기간제교원 평가서 작성(예시) [서식 22, 23] 참조

마) 결과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학교장 추천 등록 참고 자료로 활용

- 평가 우수 기간제교원에 대해 본인 동의 시 기간제교원 NEIS 인력풀에 적극 등재함
- 조회 및 등록 방법은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참고자료 4] 참고

나. 산학겸임교사

- 산학겸임교사 운영은 별도의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에 따름

※ 산학겸임교사 운영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진로직업**정책과



다. 명예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규교원 외 별도로 임용

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 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자격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임용 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4)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라. 강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

가)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발생(초·중등교육법 제22조)

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2조)

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긴급하게 대체강사를 요하는 경우(이후 병가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은 기간제교원 채용)

2) 임용 형태

가) 1개월 미만 결원 보충

-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나)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은 주관부서의 기준에 의함(주관 부서에 문의)

다)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3)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4) 임용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 고교학점제 교과순회전담 기간제교사 채용불가로 강사채용 시 정규교사 배치불가 임용교과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강사 채용 가능 (2022학년도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 계획(교원정책과-17231(2021.10.29.) 참조)
- 5) 임용기간 : 결원 발생 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 6)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 ※ 초·중등 교원 임용 전 강사 경력인정 지침 참조
- 7) 채용 절차 : 기간제교원 지침을 준용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3주 이내의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 및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이 지원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음.
- 8) 보수 등 처우
- 가) 계약 시수 산정 기준
- ①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 ②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경우,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 ③ 학급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 나)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 ①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담당 강사
 - 강사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강사수당 편성기준 : 10,000원 ~ 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 ※ 사업에 따른 별도 지침에 의함(주관부서에 문의)
 - ②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채용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은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출장의 경우에는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단 학교



운동부 운영교에서 대회출전으로 수업 결원보충 강사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 체육업무매뉴얼」 및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에 따라 강사 채용 가능

-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22,000원 ~ 130,000원(‘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2018.2.1. 이후)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가호	26,000원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24,000원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22,000원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위 각 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 (예시 :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이지만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는 가호를 지급함)
-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집행하되,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확보 되는 범위에서 운영

④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

- 지급 관련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강사 주휴수당 지급 기준

- 1)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 2) 주휴수당액 = $\frac{1\text{주총소정근로시간}}{40\text{시간}} \times 8 \times \text{약정시급}$
- 3) 기타 지급 기준
 - 1주의 기산점 : 근로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 다)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48조, 노사협력과-8418(2021.11.1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5(2022.1.11.))
- 결제 및 교부 방법

결제 방법	교부 방법	
전체 임금명세서 파일을 열람제한 설정하여 내부결제	⇒ 개인별 임금명세서 PDF파일을 보안설정하여 내부결제 (공람 처리)	☞ 근로자별 생년월일로 보안설정 (한컴오피스 2020버전에서 가능) ☞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내 및 고지
	⇒ 공람 처리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 메일로 전송 또는 서면 교부	☞ 교부대장 관리 - 메일 전송 화면 저장 - 수령증 사인 받기

※ 교부 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

- 교부 시기 : 재직자(정기 지급일), 퇴직자(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하는 때)
- 작성방법 : 법정 서식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서식 29)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III → 계약제교원의 복무

1) 출장

가.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1)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 2) 장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

2) 겸임 및 순회 근무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나. 학교장이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겸임·순회할 수 있음

다.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3) 근무시간

가.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내지 13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 2)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4) 휴가

가.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예관한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휴가 종류 : 연가, 공가, 공무상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 재직기간, 계약기간, 직무에 종사한 기간 산정은 민법 160조 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함

1) 연가

가) 신규 계약시 :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함. 계약기간 1개월 초과 당 1일의 연가일수를 산정함

※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예 : 1개월 → 연가 없음, 5개월 2일 → 5일, 12개월 → 11일



- 나) 동일교 기간 단절없는 재계약시 : 재직기간과 계약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함.
(연가일수 = 과거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 계약개월 수 ÷ 12) : 소수점이하 반올림

[기간의 단절없는 동일교 1년 재계약시에 연가 일수]

과거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 재직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을 제외한 이전의 연속된 동일교 근무경력만을 산정
- ※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예시 (세부 산정 방식은 연가 환수시 기준에 따름)
 - 1년 재직 후 1년 재계약시 → 12일 (연가일수 12일 × 12/12)
 - 1년 재직 후 6개월 5일 재계약시 → 6일 (연가일수 12일 × 6/12)
 - 3년 재직 후 6개월 15일 재계약시 → 9일 (연가일수 15일 × 7/12)

- 다) 연가 환수 : 계약기간 종료 전 면직(퇴직)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 산정하며, 기 사용한 연가가 재 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결근) 처리함.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의 연가 산정]

재 산정 연가일¹⁾ = $\frac{\text{해당 계약기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²⁾$

※재 산정 연가일¹⁾: 소수점이하하는 반올림함

※해당 계약기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²⁾: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을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2) 공무상병가 :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계약기간 범위에서 180일까지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음
- 3) 일반병가 : 정규교원의 병가 운용 규정을 준용하며,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text{최대병가일수} = \text{일반병가}60\text{일} \times \frac{\text{계약월수(일 단위 절사)}}{12}$$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 4)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 2, 3, 4, 5, 10, 11, 12, 13, 14, 15, 16항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
 - ① 기간제교원의 육아시간(5항)과 가족돌봄휴가(14, 15항)의 사용 기록은 NEIS시스템 개선 전까지 학교별 별도기록 관리하며 퇴직 후 재임용교에서 요청시 제공함
 - ②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르며,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부여함



$$\text{가족돌봄휴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0\text{일} \times \frac{\text{계약월수(일 단위 절사)}}{12}$$

- ※ 유급의 경우 연간 누적관리 상 2일(16시간), 둘 이상의 자녀일 경우 1일(8시간) 가산까지만 가능
- ※ 연간 누적관리 상 유,무급을 합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5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64호)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1)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2)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 3) 산학겸임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에 따름
 - ※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6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내지 제28조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7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 계약내용에 의함 : 채용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계약 전 해당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분쟁을 방지토록 하며 계약해지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함(해당교사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별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계약서에 명시)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 5)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경우
- 6)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 7)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하여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강구
- 8)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한) 경우 (예: 채용 전 성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기간 중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등)

다. 인력풀에 등록된 기간제교원을 위 ‘나’의 사유 중 “1), 2), 3), 4), 5), 6), 8)”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인력풀 등록을 삭제 처리함

※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중도계약해지예고통지서(서식28)**를 서면으로 안내함.

라. 위 ‘나’의 사유 중 “7)”의 사유로 계약 해지할 경우, 동일교 및 경기도교육청 내의 타 학교에서 채용공고 없이 임용 가능(계약 해지교에서 당초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서(서식 26)를 발급하며, 계약 잔여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채용 절차 거쳐야 함)



8 불체포 특권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

9 수업 결손 방지

결강 등 업무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업무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
임용 제한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

10 교권존중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나.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사안 처리 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11 신분증 발급

가. 신분증 발급 및 관리

- 1) 기간제교원 신분증 발급은 각급 기관별로 정하여 시행(의무사항 아님)
- 2) 발급 등에 필요한 예산은 각 기관 자체 부담
- 3) 기간제교원 신분증 발급시 기간제교원 자필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발급
- 4) 발급대장 기재
- 5) 임용기간 만료시 반드시 신분증을 회수 처리할 것(회수한 신분증은 폐기 처리, 발급대장 삭제)



나. 신분증 규격, 디자인 및 내용

구분		내용
규격		- 플라스틱(가로 54mm, 세로 85.6mm) - 백색바탕에 검은색 글자(숫자)만 사용
		신분증  김 ○ ○ ○○고등학교 No. 2018-01 소속 ○ ○ 고등학교 직위/직급 기간제교원 성명 김 생년월일 1983. 1. 1 임용기간 2018. 3. 1. ~ 2019. 2. 28. 2018. 3. 1. ○ ○ 고 등 학 교 장 ☎ 031)249-0000
앞면	① 사진	- 사진 규격(가로 30mm, 세로 40mm) - 신분증 발급을 위한 사진은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② 한글 성명	한글 성명 기재
뒷면	③ 발급번호(연번)	학교별로 발급번호 관리 [ex) NO. 연도-발급번호]
	④ 소속기관명	소속기관명
	⑤ 직위/직급	기간제교원
	⑥ 성명	한글 성명 기재
	⑦ 생년월일	생년월일
	⑧ 임용기간	임용기간
	⑨ 발급일자	기간제교원 임용일자(계약시작일) 기재
	⑩ 발급기관장 및 관인	발급기관장 및 관인(관인생략 가능)
	⑪ 연락처	발급기관 대표 전화번호



IV

→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관련 질의·응답

1.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개월 이상'에서 '1개월'의 의미는?

☞ 관련 법에 근거한 역산(曆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가 1개월임.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까지 / 5월 25일 임용 → '6월 24일'까지, (근거) 「민법」 제160조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3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

☞ 신학년도 시작일로부터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기간제교원의 채용시에 정규교원의 '①결원기간의 시작일', '②결원기간의 종료일', '③결원기간 사이의 중간공백일'이 공휴일 또는 휴업일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가?

☞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에 공휴일 또는 휴업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임용함(①, ②). 또한, 결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공백일(두 건의 결원 사안 간의 사이 날)이 공휴일 또는 휴업일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및 근로관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임용함(③).

4. 계약의 원인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가?

☞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 수립시 기간제교원 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단절없이 연속되며 학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다른 원인행위에도 준용할 수 있음

5.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 임용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별도의 사안으로 재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장 승인이 완료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6.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인턴교사 등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계약·임용할 수 있는가?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사업별 담당부서에 강사 기준 등 문의)

구 분	문 의 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①항 의 1호, 2호, 3호, 4호, 5호 관련	→ - 초·중등 교과교사, 보건, 영양교사 : 교원정책과 - 사서, 특수, 전문상담교사, 유치원교사 : 해당부서별로 문의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그 외 사업	→ 사업별 담당부서(※사업별 기준에 따름)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구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나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전일제 대신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임.

※ 사업별 계획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시적 보충으로 이루어지는 인턴교사·수준별이동수업강사 등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아니라 강사임.

또한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강사, 교과교실제강사 등은 보수책정이 호봉제(기간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시간당 또는 월정액(강사)으로 지급함. (사업별 담당부서에 문의)

7. 기간제교원이 동일교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가?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사유로 임용할 수 있음. 이는 해당학교에서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을 때 해당 학교에서 4년의 임용 기간을 마친 기간제 교원도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동일교에서 4년간 연속하여 임용되었던 기간제 교원에게 재채용에 대한 암묵적 구두약속 등을 하고 형식적으로 신규채용 절차만을 거쳐 해당 교원을 재채용하는 것은 불공정 채용사례에 해당됨.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모든 지원자에게 채용 기회와 절차가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8. 지침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원 적용 대상은? ☞ 공립 계약제교원

구 분	근 거	비 고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1개월 이상 채용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명예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산학겸임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산학겸임교사'는 별도지침 (진로직업정책과)을 따름

※ 위 근거 이외 계약제교원(사립 계약제교원 등)은 사업부서의 별도 근거를 따름



9. 초급대학 졸업, 교원양성소 수료 등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강사로 고용할 때 적용하는 강사수당은?

☞ 나호(4번, 5번 조항)와 다호(3번 및 5번 조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나호	24,000원	채용분야와 관련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호	22,000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10. 기간제교원도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나?

☞ 기간제교원의 복무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4, 15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등 기간제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라 실시 가능함.

11. 정규교사 A가 휴직 등을 하여 대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였다. 교사 A가 휴직 기간 종료일 이후 단절없이 연속하여 10일간의 병가를 신청하였을 때 계약제 교원 채용 방법은?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기간이 1월 미만이므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결원사유의 원인이 되는 교사가 동일하고, 대체 기간제 교사도 동일하며, **추가로 발생한 결원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 한하여** 기간제 채용 계약을 추가발생 결원기간 이내로 연장 계약할 수 있음. 즉, 추가로 발생한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전형 절차를 거쳐 새롭게 계약하여 임용하여야 함.

※ 용어의 정리

- “재계약”: 기간 단절 없는 연속 근무로 1개월 이상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전형절차를 거침
- “계약 연장”: 기존 계약에서 계약만료 기간만 1개월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 호봉 재확정 하지 않음

12.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기간제교원 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

☞ 특수학교(급)의 기간제교원 채용을 할 때 채용하고자 하는 교사의 소지자격을 확인해야 함. 채용하고자 하는 학교(급)에 맞는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며, 해당 학교(급)에 맞는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함.

1) 해당 학교(급)에 맞는 특수교사 자격자가 없을 때

- 과정을 달리하는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채용 (예)중학교 특수학급에 초등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채용

2)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가 없을 때

- 유초등 또는 중등 일반교사 채용

※ 해당 과정과 다른 자격 소지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
또한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예)미술치료사 자격 소지자를 특수학급 교사로 채용할 수는 없음



13. 2023.2.5.일자로 만65세가 되는 자를 2022.9.1.~2023.2.28.까지의 기간제교원 채용건에 대해 임용이 가능한가?
- ☞ 기간제교원의 임용 상한 연령은 만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이나, 1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채용계획 수정 결재 후 공고문에 명시). 단, 임용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 전까지 임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함. 임용일이 만65세 생일 전이고 계약종료일은 당해학기 이내이므로 임용 가능함.
14. 정규교원의 육아휴직(2018.3.1.~2019.2.28.)으로 동일기간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였으나 휴직기간 중 출산으로 육아휴직 조기복직(2018.10.1.)과 이어 출산휴가(2018.10.1.~2018.12.31.)와 육아휴직(2019.1.1.~2019.8.31.)을 내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처리는?
- ☞ 결원사유의 변경이 있음을 내부결재로 남기고 기간제교원의 2019.2.28.까지의 계약기간을 보장함. 이후 결원 기간(2019.3.1.~2019.8.31.)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함.
15. 기간제교원이 재직 중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경우에 대체 기간제교원의 채용이 가능한지?
- ☞ 기간제교원의 휴직은 불가(육아휴직 제외)하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 2, 3, 4, 5, 10, 11, 12, 13, 14, 15, 16항을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휴가 기간을 대체하는 계약제교원의 채용도 가능함. 또한, 특별휴가 종료일은 계약종료일을 넘지 못하며 교육비특별회계 기간제교원 인건비로 지급 가능함.
16. 정규교원의 휴직사유 소멸에 의한 조기복직으로 기간제교원에게 계약 해지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제교원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기간제교원과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정규교원의 휴직사유 소멸로 인한 조기복직에 따라 계약 해지 시, 계약 해지预告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17.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지?
- ☞ 「교육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교사의 신규임용의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에 의거 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함. 또한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 임용시 교사의 신규임용기준을 준용하여 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함. 따라서,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은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함. 다만, 초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의 경우 교과전담에 한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지만,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함.



V

참고자료

① 계약제교원 운용 근거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점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3.1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1.26.]

※ [교육공무원법] 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44조(휴직), 45조(휴직기간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의 제한), 제47조(정년), 제49조(고충처리), 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51조(징계의결의 요구)

※ [국가공무원법] 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휴직의 효력,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강임), 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의보충발령), 78조(징계사유, 징계부가금), 79조(징계의 종류), 80조(징계의 효력), 82조(징계 등 절차), 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사유의 시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 2016.8.2.>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확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확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별표 11>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명예교사, 강사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과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 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 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개정 2016.3.25.>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한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국제대회, 국내대회의 범위



1. 산업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2.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3. 비영리기관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기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사회단체

-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밝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 중,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무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등록을 필한 100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YWCA, 환경운동연합, 교통문화운동본부,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대한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5. 국제대회

- 공인된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연대회

6. 국내대회

-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전국규모 또는 시·도 단위의 대회



※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예시)

과목	직 무 분 야
축산	축산, 식육처리
원예	종자, 시설원예, 원예, 버섯종균, 화훼장식
임업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펄프제지, 목재가공, 목질재료
조경	조경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운전
농업토목	토목
식품가공	식품, 식품가공
기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윤활관리, 생산기계, 컴퓨터(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보일러, 치공구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설비
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항공	항공
철도운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조선	조선
주조	주조
용접	용접
금속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제련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귀금속가공, 자수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통신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자원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굴착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섬유	방사, 방적, 염색가공, 의류, 섬유기계,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절삭가공	메카트로닉스,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과목	직 무 분 야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인쇄	인쇄
도자기	도자기공예
요업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제어계측	공업계측제어, 전자
열처리	금속, 금속재료
환경공업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항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잠수
기관	조선
어업	어로
기초사무	워드프로세서, 한글 및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 전자상거래운용
전문사무	직업상담, 사회조사분석, 전자상거래관리, 소비자전문상담, 임상심리, 컨벤션기획, 텔레마케팅관리,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게임기획,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스포츠경영관리, 전자출판, 영사
양재, 한재	의류, 패션디자인, 양복, 한복, 세탁
수예	자수
조리, 조주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북어조리, 조주
제과제빵	제과제빵
미용	미용, 헤어, 피부, 화장품 메이커
오페라, 영화, 판소리 등 문화예술분야, 수영, 테니스, 태권도, 요트, 골프 등 스포츠분야, 기능분야	문화예술, 체육, 기능 관련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입상 전문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명장
영상제작, 문화창작	방송, 연극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예술 관련 전문가
실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환경 등 생태교육, 기타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제교원은 다음과 같음

- ① 기간제교원 : 휴직·파견 등에 의한 결원보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②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동법 제18조제3항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8호 “단시간근로자” 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 ③ 만 55세 이상 고령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④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종사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계약제교원 4대 보험 가입기준

종류	자 격	보 험 료	보험담당기관
국민연금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원 : 당연 가입 - 1개월 이상 강사 :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 : 4.5% - 본인 : 4.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 당연 가입 - 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 5.99%(본인 2.995%)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본인3.27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 당연 가입 - 강사 : 부분 가입 ※ 제외: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 보수월액의 1.5% - 기관 : 0.85% - 본인 : 0.6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강사 : 당연 가입	◦ 전액 기관부담 - 업종별로 상이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험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보험요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확인

※ 기타 직종은 사업담당부서 계획에 따름



2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4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법 제56조제1항제17호 및 제57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계약제교원 NEIS 메뉴 :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
인사기록
- 과거 동일교 경력 확인 :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퇴직
상태 인사기록카드 여부 확인
- 신규 인사기록 등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 자료전송 요청/승인 :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인사기록 입력 · 수정 · 확인 :
인사기록(계약직)
- 퇴직예정일 등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 퇴직처리 :
계약직교원퇴직

1. 메뉴 : [교원인사] - [인사기록] - [기능별명부] - [계약직구분별명부]
2. 신학기 시작 시, 계약직명부의 교원 중 퇴직자가 명부에 나오는 경우 반드시 퇴직 처리함

[illegible]



■ 세부 처리 절차 : [NEIS 메뉴: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

1. 신규 인사기록 등록 (인사기록카드 생성)

가. [계약직교원 신규임용]에서 처리함

나. 성명, 주민번호, 기관, 초중구분, 교원구분, 공사립구분, 호봉, 계약제구분, 최초임용일, 근무년수, 보직구분, 현부서(기관)임용일, 중등교사일 경우 임용과목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함

※ 신규 생성시 “해당주민번호의 인사기록카드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직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대상자 퇴직처리요청 후 처리함.

※ 기타직(인턴교사 등),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비공무원인사에 등록 관리함.

2. 기존 인사기록 재사용 (계약 직전 근무지가 동일교인 경우만 해당)

가. [(인사기록(계약직))]에서 처리함

나. 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 ⇒ 퇴직 인사기록카드의 재직상태를 재직으로 변경하여 재사용함.

- [근무사항]탭에서 재직상태를 ‘퇴직’에서 ‘재직’으로 변경
- 계약시 호봉, 근무년수 등으로 수정 후 {연계재전송} 클릭(급여 연계됨)

다. 기간 단절이 없는 연장 계약의 경우 ⇒ 기 인사기록카드를 퇴직처리 하지 않고 퇴직예정년월일을 수정 후 계속 사용함 (6. 퇴직예정일 등록·확인 참고)

- [인사기록(계약직)]의 [근무사항]탭에서 호봉, 근무년수 등을 계약사항에 맞추어 수정 후 {연계재전송} 클릭

3. 인사기록 자료전송

◎ 계약제교원 인사기록카드 자료전송 방식

-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에 인사기록카드 전송을 요청하고 전 근무지에서 승인하여 처리함
- 자료전송시 연계되는 정보 : 학력, 임용전경력, 가족, 학위취득, 개인신상, 병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 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벌, 연구실적, 적성검사, 비교,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취득, 가산점

가. [계약직교원 자료전송]에서 처리함

※ 자료전송 요청 전에 반드시 신규 인사기록카드를 생성해야 함.

나.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다.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라.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자를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4. 직전 근무경력의 등록

- 직전 계약제교원 근무 경력을 [인사기록(계약직)]의 [임용전경력]탭에 추가함 (육아휴직경력은 제외)

5. 근무사항 등 주요내용 검토·확인

- [인사기록(계약직)]에서 [근무사항]탭의 호봉, 근무년수 등 주요 정보 검토 및 확인
- 호봉, 근무년수 등 급여 연계항목의 작성에 유의

6. 퇴직예정일 등록·확인

- 인사기록카드 작성 후 바로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에서 퇴직예정일을 등록 및 확인함
- 급여업무와 연관된 메뉴로, 퇴직예정일(계약해지일)이 등록되어 있어야 계약 마지막 달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입력된 퇴직예정일은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의 [근무사항]탭에 퇴직예정일이 표시됨

7. 퇴직처리

- 등록된 퇴직예정자들을 [계약직교원퇴직]에서 퇴직 처리함
- 퇴직처리를 바로 해야 타 기관에서 해당 교사를 등록이 가능함
- 퇴직일을 입력하여 {퇴직처리} 버튼을 클릭 후, 아래 상세부분에서 퇴직사유(계약해지(만료))를 선택하여 {저장}함. 퇴직처리 취소 시에는 {퇴직처리취소} 버튼을 클릭함
- ※ 기존 이중 생성된 동일인의 인사기록은 삭제 불가능함 (급여, 복무자료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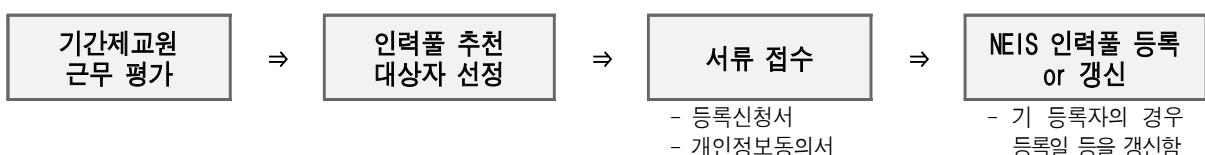
4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

- 운영 목적 : 우수 기간제교원의 신속한 지원 채널 확보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 조회 및 등록 권한
 - 단위학교 NEIS 교원인사권한자(교감)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 추천구분별 등록 시기 및 대상

추천구분 (등록처)	등록 시기	등록 대상
학교장 추천자 (단위학교)	재직기간 중	3개월 이상 임용계약 체결된 자로 근무평가 후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임용 대기자 (교원정책과)	정기(매년 2월) 및 수시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 인력풀 등록 신청자 (타시도 합격자 가능)

※ 등록 제한 : 등록일 기준 만 62세 이상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명예퇴직자

■ 학교장 추천자(단위학교)의 인력풀 등록 절차





❑ **삭제 기준** : 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자, 만65세 경과자, 정규교사임용자를 도교육청에서 정기 삭제함

❑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 이용방법**

- NEIS 메뉴 위치 : [교원인사]-[계약직교원]-[기간제교원인력풀(경기)]

- 공개 인력풀은 별도 운영함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채용정보 - 구인/구직(기간제교원)

- 메뉴 이용 설명

메뉴명	메뉴 설명
① 기간제교원 등록	- 나이스 계약직인사기록카드가 등록된 교원이며 기간제교원인력풀에 동일한 주민번호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등록 가능함. 나이스 계약직인사기록카드에 등록된 교원이 아닌 경우, 인력풀에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번호 중복확인, 희망지, 전화번호 등 주요정보를 입력 후에 [등록]처리함 - 등록일은 인력풀 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일로 함
② 기간제교원 조회	희망지역, 추천구분, 교원자격구분, 담당과목 등의 조회조건으로 인력풀에 등록된 미채용 인력풀등록자 정보를 조회하며, 그리드에 검색된 리스트를 더블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음  ※ <채용여부> 재직 중 계약직인사기록카드가 있다면 채용으로, 퇴직 상태의 인사기록카드만 있다면 미채용으로 보여줌. 인력풀에서 별도 채용처리하지 않음



메뉴명

메뉴 설명

기간제교원상세조회

근무사항

자격면허

경력

연수

비고

기간제교원확인서

채용상태: 채용중

성명	홍길아	생년월일	900102	교원자격구분	초등
담당과목1	중국어	호봉		근무년수	
담당과목2		전화번호	0311234567	이메일	
희망1지역	가평	희망2지역		희망3지역	
추천교	수원여자고등학교	추천교전화번호	03112345678	등록일	2017-08-29
현근무기관	강원도교육청	계약만료예정일	2018-12-01		

- 상세조회 화면에서는 인력풀등록자의 채용시 공고생략 증빙서(기간제교원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음

- 당해 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교원의 인력풀 근무사항, 연락처, 희망지역을 관리하고, 계약직인 사기룩카드의 자격면허, 경력, 연수 사항을 자동으로 가져와 보여줌
- 단위학교에서 등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한 기간제교원의 인력풀 재등록 시 반드시 신규 인력풀 등록절차(평가 후 동의서 징구 등)를 거치고, 입력 시 등록일만 갱신함

기간제교원관리

2018년10월13일 13시35분

검색 ?도움말 인력풀관리

성명

생년월일

기관

찾기

조회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교원자격구분		전화		담당과목1	

근무사항

자격면허

경력

연수

비고

적용

삭제

성명		생년월일		교원자격구분	
담당과목1		호봉		근무년수	0
담당과목2		전화번호		이메일	
희망1지역		희망2지역		희망3지역	
추천교		추천교전화번호		등록일	
추천구분		추천/대추천		현소속기관	
계약시작일		계약만료예정일			

③ 기간제교원 관리

기타 교육청 이용 메뉴

- 일괄등록 : 도교육청에서 신규임용대기자 등록시 이용함
- 완전삭제 : 도교육청에서 중복오류처리, 정보완전삭제 등을 위해 이용함
- 전 메뉴에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조회범위는 관할 기관 범위 내까지 가능함
- 기초자료관리, 통계 및 현황 : 인력풀 이용 환경설정과 통계에 활용함

인력풀 이용 이메일 문의

- 문의 유형 : 등록 오류, 인력풀 삭제/완전삭제 요청 등 인력풀시스템 이용 문의
- 문의처 : 초등 기간제교원 - goodjs@korea.kr 249-0157
중등 기간제교원 - jjmyadalg@korea.kr 249-0233

※ 이메일 문의시 기재사항

- 문의자 정보 - 소속교, 직위, 성함, 연락처, 문의내용
- 기간제교원 정보 - 소속교, 성함, 생년월일, 교원자격(과목)



VI

참고 서식

서식 1 채용계획 기안문 (예시)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간제교원(○○교과 또는 ○-○담임) 채용 계획

1. 관련: ○○학교-0000(2022.00.00)『교사 ○○○ 휴직』
 2. 교사 ○○○의 결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 가. 임용 분야 및 임용 예정 인원: ○○과 ○명
 - 나. 임용 기간: 2022. 3. 1.(일)~2023. 2. 28.(일) (1년간)
 - 다. 응시 자격: (해당과목) 초/중/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라. 인력풀 활용 시 일정
 - 1) 2022. 2. 10.(월)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간제교사인력풀 활용
 - 2) 2022. 2. 11.(화) ~ 2. 12.(수) : 원서 접수 및 서류 심사, 면접 대상자 공지
 - 3) 2022. 2. 13.(목) : 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
 - 4) 2022. 2. 14.(금) : 임용예정자 선정 및 대상자 결정 통지
 - 마. 인력풀 대상자 없을 시 공고 일정
 - 1) 2022. 2. 11.(화) ~ 2. 14.(금) :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2) 2022. 2. 17.(월) ~ 2. 18.(화) : 서류 심사 및 면접 대상자 공지
 - 3) 2022. 2. 19.(수) : 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
 - 4) 2022. 2. 20.(목) : 임용예정자 선정 및 대상자 결정 통지
 - 바. 제출 서류 및 전형방법 : 붙임 참조
- 붙임 1. 기간제교사(○○교과) 임용 계획 1부.
2. 채용공고문 1부. 끝.

담당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20**.**,**.**) 접수	
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	
전화	전송	/	/



서식 2 채용 공고문 (예시)

○○○학교 공고 제20 -○○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

1. 채용

가. 채용 권자: ○○○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학년 담임 1명, ○○과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 ○학년 담임 : 20 . . . ~ 20 . . .
- ○○과 : 20 . . . ~ 20 . . .



-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 . . . (요일) 16:00 이후
-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 . . . (요일) 16:00 이후
- 다. 3차 심사(면접 시험)
 - 3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 . . . (요일) 00:00
-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 . . . (요일) 예정

6. 원서 접수

- 가. 기간: 20 . . . (요일) 09:00 ~ 20 . . . (요일) 15:00까지
- 나. 접수 방법: 이메일(ooo@ooo.ooo), 우편, 방문 (○○○학교 행정실, ☎000-0000-0000)
-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전화 000-000-0000)



서식 3 기간제교원 지원서(예시)

기간제교원 지원서

※ 접수번호 :

사진 (3×4cm)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인적사항	현 주소	(우편번호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력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0000. 00. 00. ~ 0000. 00. 00.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경 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학교	0000. 00. 00. ~ 0000. 00. 00.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작성자 : (서명)

○○○학교장 귀하

※ 유의사항

-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경력’ 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할 것.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0000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조회		
2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5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신규임용대기자용)

※ 2월말 경 결격조치 완료 후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제 호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 확인원(기간제교원 임용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내용	임용예정교과			
	최종출신학교			
	소지자격증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결과			
	신원조회 회보서	수형/선고유무		
		확인내용		
	범죄경력조회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확인서 요청기관			
민원답변 FAX 번호				
위 사람은 20 년도 경기도교육청 초등(중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초등(중등)인사담당 장학관 ○ ○ ○ 담당자 ○ ○ ○ 경기도교육감				



서식 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 귀하

공 지 사 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1. 1. 28.>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조회 용도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경찰서장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경찰서장	→	통보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 (예정직종)



서식 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장과 「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회 등을 실시할 경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학교장 귀하



서식 10 계약제 교원 경력이 있는 교사의 임용서류 송부 요청 기안문 (예시)

○ ○ ○ 학 교

수 신 ()학교장

(경유)

제 목 계약제 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관련입니다.
2. 우리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순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1				(/ ~ / 임용 예정)

나. 요청서류

- 1) 채용신체검사서(원본대조필) 1부.
 -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필) 1부.
 - 3) 호봉확정표(원본대조필) 1부.
 -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회신서(원본대조필) 1부.
 - 5) 결격사유조회 관련 서류 일체 1부.
3. 아울러,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사기록 자료전송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위치 : 나이스-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전송].
 끝.

○○○학교장



임용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12 서류전형 평가표 (예시)

서류전형 평가표

과 목		성 명	
-----	--	-----	--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	전공/부전공 여부						
2	학위 취득 및 대학원 수학 여부						
3	기간제교원/시간강사 경력 및 지속근무 여부						
4	기타(전임교 업무, 연수이수실적 누계 등)						
5	자기소개서(A4 단면 1쪽 이내)						
소계		/ 30					
6	채용시험 가점 여부	3 / 1.5 / 0					
합 계		(점)					

서 류 전 형 위 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12점(40%) 이상 득점자만 해당됨. 세부기준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6 참조
(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13 면접 평가표 (예시)

면접 평가표

과 목		성 명	
-----	--	-----	--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점)					
		8	7	6	5	4	3
1	인성 (태도, 근면성, 협동성, 적응력 등)						
2	교직원 (책임감, 성실도, 봉사정신 등)						
3	자질 (적극성/진취성/추진력/책임감/지도력 등)						
4	소양 (표현력, 논리성, 이해력, 지도력 등)						
5	기타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 이해도 등)						
소계		/ 40					
6	채용시험 가점 여부	4 / 2 / 0					
합 계		(점)					

면 접 위 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16점(40%) 이상 득점자만 해당됨. 세부기준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6 참조
(본인이 해당자료 중빙 필요)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14 수업시연 평가표 (예시)

수업시연 평가표

과 목		성 명	
-----	--	-----	--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점)				
		5	4	3	2	1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학습목표 및 동기유발)					
2	수업 설계 능력 (수업모형 및 내용 구성)					
3	교수 활동 (발음 및 발문 능력)					
4	학습 자료 활용 (교수 매체 활용 능력)					
5	발문 및 판서 (학생 사고의 촉진 여부)					
6	평가 및 정리의 적절성					
소계		/ 30				
7	채용시험 가점 여부	3 / 1.5 / 0				
합 계		(점)				

수업 심사 위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12점(40%) 이상 득점자만 해당됨. 세부기준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6 참조
(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15 평가 집계표 (예시)

응모자별 평가 집계표

관리번호[]

과목	심사위원 성명	평 가 점 수			
		서류(30) +가산점	면접(40) +가산점	수업시연(30) +가산점	계(100) +가산점
국어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위원 D				
	심사위원 E				
	합계				
	평균				

※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교과목별 평가 집계표

집계 담당자 : (인)

과목	관리 번호	응모자 성명	평 가 점 수				순위
			서류(30) +가산점	면접(40) +가산점	수업시연(30)+ 가산점	계(100) +가산점	
국어	1						
	2						
	3						
수학	1						
	2						
	3						

※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서식 16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명예교사) 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및 채용사유) (“계약제교원의 종류 명기, 채용 근거조항 및 사유 명기”) <예시: 기간제교원, 명예교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1항 ○호에 의한 ○○휴직자 ○○○의 후임 보충”) <예시 : 1호 - 육아,동반,고용,질병,간병,연수 등의 휴직, 2호 -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3호 - 정원의기간제교원 (미배치기간제교원포함) 등 >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 ②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 /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⑦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 ⑧ “근로자(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직)

- ① “근로자”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③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연가 기간은 총 (계약기간 기준 등으로 결정)일 이내로 한다.



⑤ 병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 기간은 총 (**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일 이내로 한다.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 ①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 지침의 복무기준을 적용한다.
- ②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경우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8.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한) 경우(예: **채용 전 성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기간 중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등**)
 9. 조건부 계약 내용(예시) : 제00조 **사용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연수) “근로자”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1개월 이상 계약자)

제13조(기타 채용조건)

-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인

“근로자” : 주 소

성 명

인



계약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

계약제교원(강사)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강사)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근로자”는 ○○○학교의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다.

제5조(보수지급방법)

- ① “계약제교원 강사 수당 편성 기준” 및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시간당 강사료는 ○○원으로 하고,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시간당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보수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③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나 질병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사직)

- ① “근로자”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 ① “근로자”는 예정된 수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 5.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는 경우
 -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 7.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는 경우
 - 8.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한) 경우(예: 채용 전 성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기간 중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등)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기타 채용 조건)

-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인

“근로자” : 주 소

성 명

인



서식 18 기간제교원 임용 기안문

○○중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간제교원 임용

다음과 같이 기간제교원을 임용하고자 합니다.

성 명	직위 (교과)	생년월일	발령사항	비고(임용사유)
○○○	초등학교 교사 (○○)	19**.**.*.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에 임함. ○호봉에 급함. ○○초등학교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20**.**.*.-20**.**.*.)	○○휴직 ○○○
				20**.**.*. ○○학교장

끝.

수신자

담당자	부장	교감	교장
시행 ○○학교-	(20**.**.*.)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비공개(6)



임 용 장

(성명) ○ ○ ○

(임용 사항)

초등학교 기간제교원에 임함.

○호봉에 급함.

○○○학교 근무를 명함.

임용 기간 : 20** . ** . ** . ~ 20** . ** . ** .

20** 년 ** 월 ** 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권한의 위임을 받아

○○○학교장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본인은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 수행 능력, 학생생활교육 등의 근무 종합 평가에 동의합니다.

20 . . .

담당업무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23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집계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집계표

평가 대상자명 :

확인자 :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명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명

연번	평가위원명	평가 결과	비고
1	000	추천	
2	000	추천	
3	000	비추천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평가 종합	추천 : () 명, 비추천 : () 명		최종 결과 추천

경기도○○학교 인사자문위원회(평가위원회)
경기도○○지원청 기간제교원 평가위원회



서식 24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e-mail							
	연락처							
자격면허	발급일	자격구분	종별/급별	표시과목	시행청	자격번호	비 고	
	2006.02.11	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대학교	○○대 제○○호		
	2006.02.11	부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대학교	○○대 제○○호		
경력	근무 기관			근무 기간			비 고	
	○○중학교			○○○○.○○.○○ - ○○○○.○○.○○			기간제	
	○○고등학교			○○○○.○○.○○ - ○○○○.○○.○○			기간제	
	○○초등학교			○○○○.○○.○○ - ○○○○.○○.○○			기간제	
	○○도교육청			(정규교사 근무시작일)-(정규교사 근무종료일)			정규	
계약기간 중 연수 완료 여부				(0, X)				
근무희망 지역	1지망	수원	2지망	군포의왕	3지망	화성오산		
추천기관명	○○중학교			추천기관 연락처				
유의사항	1. 자격면허 : 복수 자격, 부전공 모두 기재함 2. 경력 : 최근 경력부터 누락없이 기재함 3. 연락처, 근무희망지역을 정확히 작성함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경기도○○(초등,중,고등)학교 교장 귀하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25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한 정보 제공자에게도 편의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자택전화, 휴대폰), 소지 교사자격 면허, 성별, 생년월일, 근무희망지역, 교육경력, 특이사항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시스템 을 통해 학교 담당자에게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인력풀 등록일로부터 3년간. 또는 본인의 인력풀 등록 취소 요청 전까지 보유		
위 신청인은 「개인 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제공·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의 계약제 교원 채용 자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경기도○○(초등,중,고등)학교 교장 귀하				



서식 26 학급감축, 조기복직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확인서

학급감축·조기복직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계약 해지교			
당초 계약기간	20 . . . ~ 20 . . .		
계약해지 사유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 (직 인)



서식 2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소속					직명			성명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령 기 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8 중도계약해지예고 통지서

중도계약해지(예고) 통지서

중도계약해지 대상자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계약해지 통보일자	년 월 일	
계약해지 일자	년 월 일	
계약해지 근거	(예시)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 7호-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 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중도계약해지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000 교사는 ~	

200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중도계약해지(예고) 통지서 수령증

수령일	수령자
202 년 월 일	(서명)



서식 29 시간강사 임금명세서 (예시)

<예시: 붉은색만 조정>

2021년 12월 시간강사 수당 지급 명세서

소속 : OO초등학교

지급일 :

2021-12-17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81-03-01
임용일	2021-12-13	퇴직(예정)일 (계약기간종료일)	2021-12-17
시간당 단가(원)	22,000	총 근무시간	20

세부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금액(원)	공제 항목	공제 금액(원)
강사수당	440,000	근로소득세	31,680
주휴수당	88,000	지방소득세	3,160
지급액 계	528,000	공제액 계	34,840
		실지급액	493,160

계산방법		
구 분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	지급액(원)
강사수당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 기준 다호(22,000원) x 총근무시간(20시간)	440,000
주휴수당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총근무시간(20시간) ÷ 40시간 x 8 x 다호(22,000원)	88,000

※ 강사 수당 및 주휴 수당에 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은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참조



◆ 용어 설명 및 작성요령 ◆

개인정보 및 급여기초정보	용어 설명	작성 요령
임용일	계약기간 시작일	2021-03-01 (날짜형식으로입력)
퇴직(예정)일	계약기간 종료일	2022-02-28 (날짜형식으로입력)
시간당 단가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의 시간당강사수당지급기준	지침을 참고하여 시간당 수당단가 입력
총 근무시간	계약기간중 강의한 시간수	계약기간중 강의한 강의 시간수 입력

급여 내역	용어 설명	작성 요령
강사수당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의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액 X 총 근무시간	지급된 강사수당 금액 수기로 입력
주휴수당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지급된 주휴수당 금액 수기로 입력

※ 시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내역(수당명, 계산방법) 삭제
셀 수식 활용할 경우 반드시 셀 수식의 계산방법과 금액 확인

VII → 기간제교사 육아휴직 시행 안내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357(2020.1.21.))

▣ 육아휴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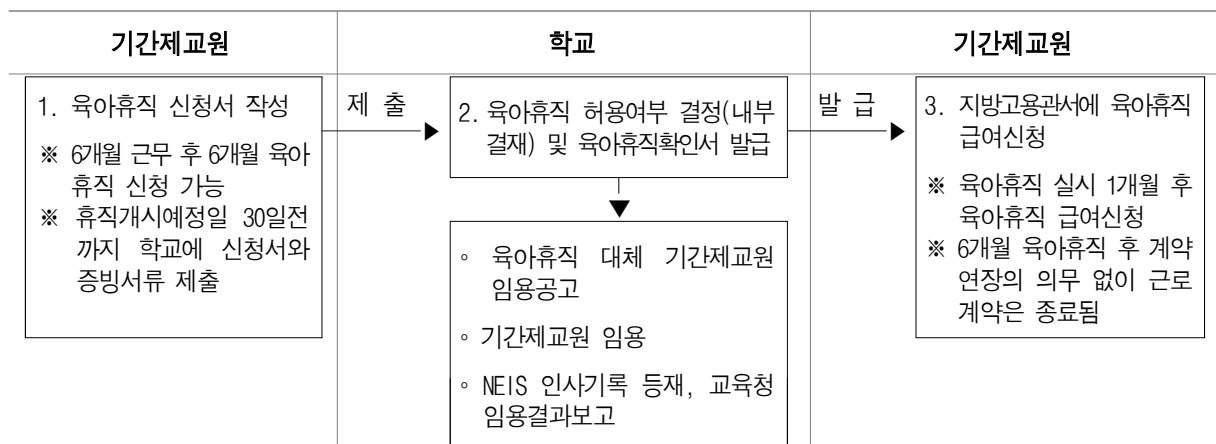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육아휴직 요건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불가

-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정책과-462, '14.2.13.)

▣ 육아휴직 절차





■ 육아휴직 사용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 가능
- (휴직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정규교원에 준하여 학기단위 휴직
- (계약기간과 관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계약) 기간에 미산입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
-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복직)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 (해고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에 미해당
 -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서식2)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청으로 복직결과 보고

■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서식1)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 용 **육아휴직 확인서(서식3)**를 발급

■ 출산휴가와 연계

-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 기타 사항

-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보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인사기록) 학교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 타 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총괄서버 퇴직 교원’ 찾기 기능 활용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복직 NEIS 발령처리

- 단위학교 교원인사권한자가 임용기안문을 작성·시행
- NEIS 메뉴 위치 : 교원인사 - 임용발령 - 임용발령 - 휴직 / 복직

① (임용기안문 개요 생성) 추가 → 제목/기안일자/공개여부 등 임용기안문 입력 → 저장

② (임용기안문 세부내용 작성) 추가된 임용기안 제목 클릭 → 세부내용 작성 → 저장 → 완료

※ 내용 : 임용구분 “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교원육아휴직”, 휴직기간, 별도정원여부(비포함) 등을 입력

③ (결재 후 시행) 임용기안문 승인요청(상신) → (결재) → 시행

※ 시행 후 즉시 근무사항의 재직상태가 변경되므로 임용일경에 시행을 원칙으로 함(급여 연계됨)

※ 과거 육아휴직 이력은 고용보험(<http://www.ei.go.kr>) 및 인사기록카드 [경력]에서 확인함(상기 Q&A 참고)

※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기능으로 인사기록카드를 이관 받았을 때 [경력]의 육아휴직 사항은 [임용전 경력]에 옮겨 기록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상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Q&A

Q1.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

Q2.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육아휴직 사용불가(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은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Q3.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개정 '19.12.24., 시행 '20.2.28.)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Q4. 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 육아휴직 개시에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대상여부는 휴직신청 기간제교원이 고용 보험에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에 유의

Q5.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

Q6.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Q7.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새롭게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과-210, '08.05.09.)



서식 1 육아 휴직원 (예시)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희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2 육아휴직 복직원 (예시)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 위(교 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3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사 항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업장명	
	③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 근로자 성명		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번호	
⑧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 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원
				원
				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제71조·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일급·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일급·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